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99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9.

김 정 희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 김정희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열린 의회의 운영 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수정 · 보완하여 달서구 어린이 · 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는 어린이 · 청소년의회 참여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어린이 ·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 열린 의회의 운영 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 현행 조례 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수정 · 보완하여 달서구 어린이 · 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3108
----------	----------

발의연월일: 2023. 9. 1.

발의자: 김정희, 박왕규, 이진환,
고명숙, 박정환,김장관,
박종길, 서민우

1. 제안이유

-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열린 의회에 대해 운영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수정 · 보완하여 달서구 어린이 · 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다. 어린이 · 청소년의회 참여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어린이 ·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어린이 ·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현행조례 : 붙임 참조
-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 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 ·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제4조(선정) ① 어린이 ·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

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 지급 및 수료증 수여

2.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 신청서

참가자	학교명 (또는 단체명)			
	참가 인원		남	
	주 소		여	
인솔자	성 명		E-mail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참가희망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추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어린이·청소년의회 신청자 명단 1부.

한국어

학교 및 단체명 : (직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귀하

불임

현행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습득케 함으로써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열린 의회(이하 “어린이의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선정 범위)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 참가 대상자를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60명 이내로 선정한다.

제4조(선정 방법)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참가 대상자 중에서 구의회 의장이 선정한다.

제5조(개최 시기) 매년 동계·하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계획 등) ① 구의회 의장은 매년 어린이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 변천사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례안 심의 등 지방 의회에서의 토론 문화 체험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참가자에 대한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수여
2. 배지·단복 등 지원
3. 선진지 견학 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 평가) 구의회 의장은 매년 어린이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